

석면조사 결과서

1. 조사 대상

건축물명(설비명)	근린생활	건축(설치)년도	
위치(소재지)	정선군 신동읍 조동2길 33	연면적(㎡), 부피(㎥) 또는 길이(m)	173.18㎡
구조	블럭	용도	근린생활
조사범위	리모델링공사로인해 지붕슬레이트만 조사		
조사 제외 부분 (상세범위/사유)			

2. 조사 목적

2-1.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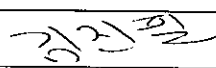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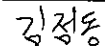
2-1-1. ■ 전체 철거·멸실 / □ 일부 석면함유자재 제거 / □ 석면함유자재 변경없음

2-2.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의2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3. 의뢰인(발주자)

기관명(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평창영월정선지부		
주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람들길104-3		
담당자명(소속/직위)	서승원 대리님		
전화번호/	033-749-1671	팩스	이메일

4. 조사기관

조사기관명	㈜ 민영	지정번호	제2014-1200001호
조사자	김 진 필(서명)		
조사자	김 점 동 (서명)		
주소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980	관할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전화번호	033)554-1971	팩스	033)554-1970
		이메일	kjp0312@hanmail.com

5. 조사 일정

조사의뢰(발주)일	2022년 09월 16일
예비조사일	2022년 09월 16일
조사기간	2022년 09월 17일 ~ 18일
결과통보일	2022년 09월 20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 석면함유자재(물질) 정보 요약

동명 (설비명)	층(부분)	자재성상	석면검출 기능공간명	석면함유물질 양 (면적, 부피 또는 길이)
주택	1층	슬레이트	지붕위	214.74㎡
	소 계			214.74㎡

7. 석면조사 결과

7-1. 예비조사 결과

가. 수집/검토된 자료

자료명	내 용
건축물대장	건축물 일반현황(위차=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2길 33, 구조=블럭조, 층수=지상1층, 주용도=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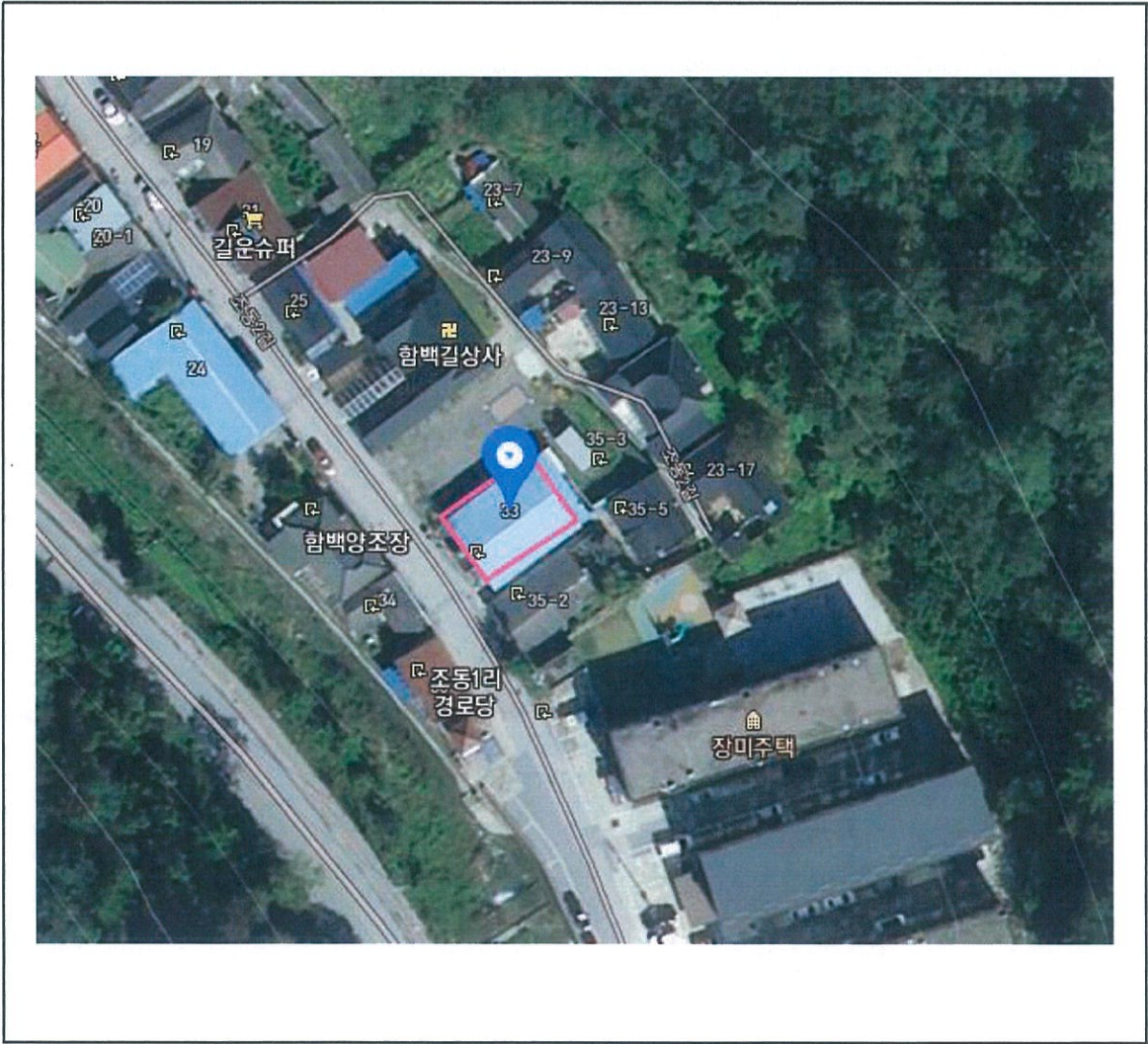
나. 기타 특이사항

7-2. 조사대상 구조

가. 각 동(설비)의 층(부분)별 구성

동명 (설비명)	층(부분)	구분된 공간 수	기능공간명(공간 수)	연면적, 부피 또는 길이
조동2길33	1층	1	주택	173.18㎡
			소계	173.18㎡

나. 동(설비) 위치도(구조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3. 조사결과

가. 석면함유 의심 균질부분

동명(설비명)		조동2길33		
연번	성상 및 특징	시료수 (시료번호)	석면함유 물질 여부 (석면종류, 함유율)	석면함유물질 양 (면적, 부피 또는 길이)
my-01	지붕슬레이트	조동04	백석면 15%	214.74㎡

나. 균질부분

동명(설비)

조동2길33

연번	기능공간 명(세부 용도)						
FA-1	주택						
연번	기능공간 내 위치별 균질부분(석면함유 의심 균질부분 연번)						
	바닥	기저	벽	천정	분무재	파이프/덕트 보온재	기타
FA-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유리/플라스틱창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4. 건축물 석면지도(「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시 작성)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

7-5. 위해성 평가 결과(「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시 작성)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환경부 고시제2012-81호)」에 따라 위해성 평가 실시

7-6. 권고사항

☐ 석면 해체/제거업무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석면 취급업무에 대한 계획서, 사용설비 및 보호구에 대한 서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에 대한 서류를 관할 노동부지청에 제출 후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그 작업이 수행되는 중에는 작업장 지역에서 대기 중 석면입자 모니터링을 통하여 작업환경과 작업자, 주위환경에 대한 안전보건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작업 완료 후에는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함유물질 잔존 유무 확인이 필요하다.

☐ 석면조사 이후 건축물 등의 유지·보수 등으로 물질이나 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보수조사

철거 작업 중 석면함유물질로 의심되는 자재를 추가로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주식 회사 민영(010-3225-0312)으로 연락하셔서 보수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균질부분 및 채취시료 등 관련 사진
2. 채취시료의 석면분석 결과서
3. 석면조사기관 지정서 사본
4. 석면조사자의 교육 이수증 사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2022년 09월 일

주식회사 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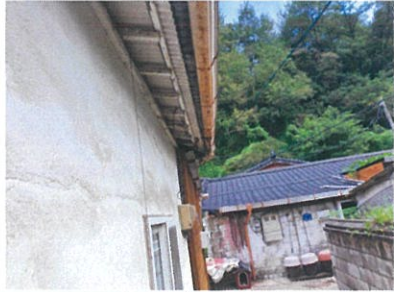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첨부1. 균질부분 및 채취시료 등 관련사진

1) 석면조사 범위

조동2길33			
	조동2길33 석면조사 실시하였음.		
	위치	동일물질구역	건축자재
	조동2길 33	지붕	함석/슬레이트

2) 석면조사 내용

관련사진					
					
함석(슬레이트)		함석(슬레이트)		함석(슬레이트)	
벽면	블럭	벽면	블럭	벽면	블럭
바닥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지붕	슬레이트	지붕	슬레이트	지붕	슬레이트

관련사진					
					
함석(슬레이트)		함석(슬레이트)		함석(슬레이트)	
벽면	블럭	벽면	블럭	벽면	블럭
바닥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지붕	슬레이트	지붕	슬레이트	지붕	슬레이트

고형시료 석면 분석 결과서

주식회사 민영

주소: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980
전화: 033-554-1971 팩스: 033-554-1970

발급번호 : MY22-39

페이지 (1)/(총 1)

1. 의뢰자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시자
2. 시료명 및/시료수 : 관리사무소(고형시료1개)
3. 시료 채취자 : 김진필
4. 시료 채취일자: 2022.09.17.-09.18
5. 시험일자 : 2022.09.17.-09.18
6. 분석방법 : 편광현미경법(EPA 600/R-93/116, 노동부 고시 제 2012-09호)/시야평가법
7. 접수번호 : MY22-39

-시험 결과-

분석번호	시료번호	시료설명	섬유특성	분석결과		석면함유량 판정
				석면물질(%)	비석면물질(%)	
1	조동04	지붕 슬레이트	불균등질 무색,연회색	백석면	15	백석면 15%
				갈석면		
				청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비섬유상물질 80	

주)

- 1) 석면 : 백석면(chrysotile), 갈석면(amosite), 청석면(crocidolite), 안소필라이트석면(anthophyllite asbestos), 트레모라이트석면(tremolite asbestos), 악티노라이트석면(actinolite asbestos) 이상 6종
- 2) 본 분석방법의 검출한계는 1% 미만임 / 불검출: 검출한계 미만 / 극미량: 석면 1% 미만 함유 (<1)
- 3) 본 결과서는 소송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본사의 허가없이 재 발행될 수 없음
- 4)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됨

분석자

성명 : 이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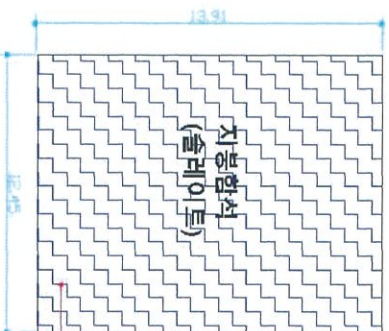
2022.09.18.

주식회사 민영

정선군 신동읍 조동2길 33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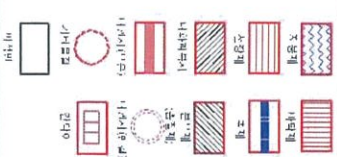
$$(1) 13.91 \times 12.45 \times 1.24 = 214.74$$



조동04	슬레이트
지붕재	(15%)

시도번호	시도계획위치	건축 자재	농업물집구역	면적(m²)	석면종류	함유율(%)	위해성 평가결과	관리방안
조동04	지붕재	슬레이트	-	214.74m²	백석면	15%	비산성비비산 손상상태:손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평가하고 제거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 지역을 완벽하게 폐쇄후 작업 실시

• 석면함유지점 범위



시도	면적
면적	면적

석면함유시도



석면비점유시도

의뢰자: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축적: None
도면명: 석면실태조사
조사기관명: (주)민영
조사일시: 2022.09.17~
2022.09.18.

제2015-120002호

석면조사기관 지정서(변경)

기관명 주식회사 민영

소재지 (235-800)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980 (황지동 71-19)

대표자성명 김진필

총 대행(지정) 사업장(0)개소, 근로자(0)명
한 계

관 할 지 역
지정사항 대행(지정) 사업장(0)개소, 근로자(0)명
한 계

대행(지정) 전국
지역

※ 준수사항

1. 석면조사기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석면조사기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15. 7.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장





제 K.S13-83-0007 호

수 료 증

소 속 : (주)민영

성 명 : 김 진 필

생년월일 : 1979년 3월 12일생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0조의3 관련 [별표10의3] (신설 `09.2.6공포, `09.8.7시행)에 따라 석면 조사자과정 (석면 조사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 석면 조사자과정 - 이론 10시간, 실습 8시간 이상.
- 교육기간 - 2013. 7. 16 ~ 2013. 7. 18
- 재발급 사유 - 소속 업체명 변경.

2014 년 12 월 12 일

고용노동부 위탁교육전문기관
사단법인 한국석면환경협회 이사장

